

의안번호	제 790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#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9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등에 따라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('18.6.1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“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“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(2018. 6. 12. ~ 2021. 6. 11.)
- 위탁기관 :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
※ 現, 위탁기관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(2015.6.12~ 2018. 6.11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- 사업비 : 547백만원(도비 100%) \* 연도별 변동 가능
- 위탁주요사무
  - 사회복지자원의 연계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
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
  -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
  -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,
  -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·컨설팅
  -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
  -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현황

- 설립일 : '06. 6. 15.건립
- 면 적 : 5,570㎡(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등 15개 기관 입주)
- 소재지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
- 직 원 : 8명(센터장 1, 팀장 3, 사회복지사 3, 시설관리 1)
- 그간 위탁현황
  - 1~4차('06. 6. 13. ~ '18. 6. 11.) /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

#### 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」 제4조(운영·관리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--

-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-  
**민간위탁 추진 계획**

---



보건복지국  
복지정책과

#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('18. 6. 11.)에 따라 향후 센터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·운영 계획입니다.

- 민간위탁(3년),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-

## I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」 제4조(운영·관리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등

## II 위탁개요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
- 위탁범위 :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2018. 6. 12. ~ 2021. 6. 11.(3년)
- 위탁기관 :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- 사 업 비 : 547백만원(도비100%)
- 위탁사무
  - 사회복지자원의 연계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
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
  -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

###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현황

- 건 립 : '06. 6. 15.
- 면 적 : 5,570m<sup>2</sup>(충북하나센터,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등 15개 기관 입주)
- 소 재 지 :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
- 직원현황 : 8명(센터장 1, 팀장 3, 사회복지사 3, 시설관리 1)
- 그간 위탁현황
  - 1~4차('06. 6. 13. ~ '18. 6. 11.) /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

### Ⅲ 추진체계 및 절차

①추진계획	• 추진계획 수립	'18. 2월
②의회동의	• 민간위탁 의회동의(3월 회기중)	'18. 3월
③위탁방법	• 위탁기관 선정 - 방법 : 공개모집(도 홈페이지 공고), 또는 재계약 - 자격 : 공고일 현재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	'18. 4월
④위탁심사	•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- 구성 : 6~9명 정도 - 심사 :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등 - 결정 : 공개모집(고득점자 선정) 재계약(사업실적, 운영효율성 등 고려)	'18. 5월
⑤협약공증	• 협약체결 및 공증	'18. 6월
⑥사무개시	• 위.수탁 사무개시	'18. 6.12

### Ⅳ 세부 추진계획

#### 1 수탁기관 선정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  - 위탁기간 동안 사업실적, 운영성과 등 고려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
- 위탁조건
  - 사업의 범위는 「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」 운영
  - 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  - 위탁시설의 용도를 임의 변경 사용 금지
  - 위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등

## ②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

- 심의대상 :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
- 개최시기 : '18. 5월 \*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준용
  - 구성인원 : 9명 이내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 - 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  - 심사항목 : 사업실적, 사업수행능력,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등
- 계획설명 :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(공개모집 또는 재계약)
- 수탁자 선정 : 사업실적, 운영성과 등 고려 선정

## ③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시기 : '18. 6월
- 내 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

## V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동의(도의회) : '18. 3월
- 위탁기관 모집 공고 : '18. 4월
-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18. 5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18. 6월
- 위·수탁사무 개시 : '18. 6월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
제4조(운영·관리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<개정 2015. 3. 27>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**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**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**부칙 제2조(경과조치)**

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